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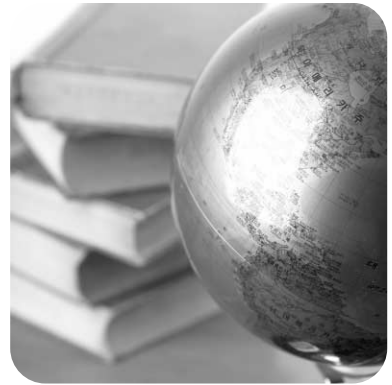
2006년 수의계 10대뉴스

10대 뉴스

1. 수의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2. 윤리위원회 설치 운영
3. 2006년도 산업동물 임상체계 재구축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심포지엄 개최
4. 공익수의사제도 시행
5. 공무원임용 관련 수의직 공무원 직급 체계 변경
6.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수의학과 증설 및 정원조정 제한
7. '06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최
8. 농림부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을 통한 수의사처방제 건의 및 최종회의 개최
9. 대한수의사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한미 FTA 서비스분야 관련 의견제출

기타 소식

-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추진
- 식품안전처 신설관련, "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안전관리" 심포지엄 개최
- 뉴질랜드, 제14차 FAVA총회 개최
- 대한수의학회 공동 수의학용어집 출간
- 인천광역시지부 동물보호소 개소
- 경상북도지부 창립 50주년 행사개최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자가진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 이영호의원 수의사법개정안 입법시도
- 대한수의학회, 영문학술지 SCIE 등재
- 서울시, 야생너구리에서 광견병 양성 판정
- 케타민 항정신성의약품지정
- 수산용 항생제 사용 국제 가이드라인 마련
- 국가 항생제 내성안전관리사업





1 수의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지난 2005년 5월 31일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되는데 이어 각각 2006년 1월 26일과 3월 14일 「수의사법시행령」 및 「수의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중이며, 수의사국가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사항(영 제9조)는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법을 주요내용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법 제9조제2호)
현재는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학의 학제와 관계없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국내 수의학제가 1998년에 6년제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면허정지처분에 따른 진료업의 금지(법 제32조 제4항 신설)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유로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권한의 이양 등(법 제21조, 제22조 및 제30조 제1항)

- 가.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수행하는 공수의(公獸醫) 위촉 및 지도·감독업무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고, 이에 따른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나. 현재 농림부장관이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하는 지도·명령을 앞으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도 할 수 있도록 함.

• 진료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영 제2조)

- 가. 인수공통질병(人獸共通疾病)의 예방, 야생동물에 대한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는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나.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에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도 포함되도록 함.

•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상설기구화(영 제4조)

- 수의사국가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수의사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구성하고 있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국가시험제도 개선·운영, 출제위원 선정, 시험문제의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수의사국가시험과목 조정(영 제9조 및 부칙 제1항·제2항)

- 가. 현행 시험과목은 1974년에 정하여진 후 1998년 수의학계의 6년제로의 개편 및 교과목 다양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나. 시험과목을 현행 10개 이상의 과목에서 4개 분야별 과목으로 변경하고, 대학·학생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 다. 시험과목을 교육과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수의학교육의 내실화와 수의인력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수의사회의 윤리위원회 설치(영 제18조의2 신설)

-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서 규정한 수의사윤리 위반 관련 면허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수의사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방법 보완(영 제20조)

- 가. 「수의사법」상 농림부장관 등은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하여 지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동법 시행령에 수의사에 대한 지도·명령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나.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물병원 외에 수의사에 대하여도 시설·업무개선의 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기관·학교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지도·명령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과잉진료행위 등 범위 규정(영 제20조의2 신설) 「수의사법」에서 위임한 수의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과잉진료행위의 범위를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을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등으로 정함.

-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 변경(규칙 제8조의2 신설)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 중 소·돼지 등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를 전문으로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진단서 등 관련서식 신설·변경(규칙 제9조 등)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를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신설하고 일부 별지서식을 수정변경함

2 윤리위원회 설치 운영

우리회에서는 지난 2006년 1월 26일개정된 수의사법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우리회 정관에 의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새로 설립된 윤리위원회는 수의업무의 적정하고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고,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수의사윤리위반과 관련한 면허의 효력정지 처분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림부의 자문요청에 따른 두 차례의 수의사법제32조 제2항 위반관련 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지난 2006년 4월 25일에 개최된 1차회의에서는 동물병원을 광고를 위한 홍보전단의 내용 중 개설되지 않은 ‘동물약국’, ‘전문의’ 등의 표현에 대하여 허위광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11월 1일개최된 2차회의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특정기관을 거론하여 ‘00기관지정 동물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진료부의 기록시기와 관련하여 응급상황에서 진료부의 이면에 기재한 진료기록을 추후 옮겨적은 사례에 대하여 수의사법에서 규정하는 진료부 기재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이라면 처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2006년도 전국수의사대회

2006년도 산업동물 임상체계 재구축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심포지엄

3 2006년도 산업동물 임상체계 재구축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심포지엄 개최



우 리회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산업동물 임상체계 재구축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회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회에서 발주하였던, ‘산업동물 임상체계 재구축’(연구책임자 : 이창우교수) 연구용역과 ‘동물약품안전사용을 위한 수의사처방의무화 실시 영향 평가’(연구책임자 : 박용호) 연구용역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2006년도 전국 수의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동물 임상체계 재구축’ 연구용역은 지난 10여년간 산업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무분별한 동물약품유통 및 자가진료의 성행으로 진료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바, 산업동물 진료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가축공제제도의 시행과 지역별 산업동물병원 간의 통합을 통한 운영을 내실화 등을 결론으로 담고 있다.

‘동물약품안전사용을 위한 수의사처방의무화 실시 영향 평가’ 연구용역은 현재 국내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외국과의 사용량 비교, 세계 주요국가의 동물약품관리제도 및 유통구조, 수의사처방제 실시 전·후의 항생제 예상 사용량 비교와 득·실분석 등을 통해 수의사처방제 적용 방안과 동물용 항생제의 오·남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회에서는 산업동물 임상체계 재구축은 축산 관련단체 등에서 수의사처방제 실시에 대한 우려로 주장하고 있는 산업동물수의사의 부족현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하여 두 가지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를 통해 정책실시를 건의할 예정이다.

4 공익수의사제도 시행

지난 2006년 3월 24일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8월 29일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으로써 2007년부터 공익수의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공익수의사제도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등과 유사하게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축산물위생업무 및 검사, 방역업무에 3년간 종사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이 공익수의사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 2002년 10월 이우재 전 국회의원(전 대한수의사회장)이 16대 국회에서 처음 「공익수의사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으나 관계부처에서 병역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여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된바 있고, 이후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해외로부터 유입됨에 따라 다시 가축방역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되어 졌고 2004년 8월 농림부에서 공익수의사제도의 시행을 포함한 “가축방역종합대책”을 국무조정실을 통해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2005년 6월 제17대 국회에서 신중식의원(민주당)이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진행되어 2006년 3월 2일 제258차 임시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법률안이 확정되었다.

공익수의사제도는 연간 150여명의 수의사를 신규로 선발하여 가축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의 가축방역기관에서 3년간 근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업무활동을 통해 국가의 가축방역업무가 한층 강화되고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관련부처를 통해 2007년 첫 배치를 위해 후보생을 선발하고 있다.

5

공무원임용 관련 수의직 공무원 직급 체계 변경



지난 2005년 12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 직렬 분류체계를 개편하고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입법예고안에는 “농업, 식물검역, 임업, 축산, 수의직렬”을 “농림축산직렬”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회에서는 수의사에 의한 축산물위생업무 및 가축방역업무 전문성확보를 근거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의 표명하였고, 2006년 6월 12일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해 농업직렬과 별도로 수의직렬을 존치하게 되었다. 이어 2006년 3월 3일에 입법예고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도 이 같이 수의연구업무를 담당하던 ‘가축위생직렬’을 ‘농업·임업·축산·농업연구’ 직렬과 함께 ‘농림축산연구’ 직렬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회에서는 수의연구업무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축위생직렬’을 삭제하고 ‘수의연구직렬’을 신설하여 타 직렬과 분리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고, 2006년 6월 12일 공포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타 직렬과 분리된 ‘수의연구직렬’을 신설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회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8일 국회에 “수의직공무원 임용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소개의원 :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 수의사 임용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수의직 8급 및 9급에 대하여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해 온바, 지난 2006년 11월 21일 입법예고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지방 수의직 공무원 직급체계에서 8급과 9급을 삭제하여 수의직의 최초 임용직급을 7급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날 입법예고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수의연구직렬을 타 직렬과 분리하여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국가직과 지방직의 일반직 공무원 직렬체계에서 “수의직렬”을 독립적으로 타 직렬과 분리하였으며, 연구직 공무원 직렬체계에서도 “수의연구직렬”을 신설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직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시 문제가 되오던 8급 및 9급 수의직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직과 동일하게 최초임용직급을 7급으로 상향하게 되었으며, 우리회에서는 앞으로도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임용확대를 위한 청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6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 수의학과 증설 및 정원조정 제한



지난 2006년 1월 13일(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278호)이

공포되었다.

우리회에서는 매년 수의인력 수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검토없이 단순히 대학의 인지도 향상과 홍보의 수단으로 수의학과를 신설하려는 일부 대학들로 인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해당대학 등에 반대의견서를 전달해왔고 '수의사수급에 관한 연구용역' 및 심포지엄 개최, 성명서발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그 일환으로 의료분야학과(의대, 치대, 약대 등)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의학과와 정원율을 조정할 경우 해당 관할부서(수의학과와 경우 농림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바, 지난해 10월 20일 입법예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에 지난 1월 13일(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일부조항을 제외하고 공포된 날부터 시행),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의학과와 정원율을 조정하거나 신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주무부서인 농림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회 정영채회장은 “지금까지 수의학과와 신설을 반대하기 위한 우리회의 대응에 협조해주신 각 시·도지부와 산하단체, 수의과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수의사 수급의 적정에 관한 검토없이 단순히 인기에 편승하여 수의학과를 신설하고자하는 일부대학들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겨난 것”이라고 의미를 두었다.

7 '06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최

우리회에서는 지난 6월 9일(금)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각 시·도 동물관리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공개강좌는 ‘반려동물의 영양’ (한국네슬레주식회사 김성호박사), ‘반려동물의 건강’ (한국동물병원협회의 강종일회장),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성도사무관), ‘기초사회화와 예절훈련’ (삼성SDI도우미센터 최윤주부장)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우리회 정영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매년 경기침체에 따라 유기견이 증가하고, 단순기호에 의한 사육 등으로 반려동물의 인식이 부족하며 적절한 건강관리 및 사회화 훈련의 미비와 공공주택 및 공공장소 출입 등과 관련한 법률, 제도에 대한 미인식으로 인해 거주지 내의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는 분쟁 다발하여 전반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인식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할 수 있는 공개강좌를 통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인식을 강화하고자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분회에서는 오승섭회원(우리회 수의무복지위원)이 강북구분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삼각건 달기 운동”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회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 문화교실

자(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공개강좌를 각 시·도지부 및 시·군분회를 주축으로 지역내 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8 농림부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을 통한 수의사처방제 건의 및 최종회의 개최



농림부에서는 지난 2005년 11월 8일 관련기관, 단체,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들을 위한 (77명)으로 위촉하여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

(위원장 :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문한교수)을 발족하였다. 이 연구모임은 동물용항생제 등 항균물질 오·남용 방지방안, 항생제 내성균 출현 방지방안, 항생제 무 함유 사료사용능가 우대 조치방안, 자가 배합 금지 방안, 항생제 대체물질검증 방법 개발,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및 방법, 관련법령 개정 등의 기능을 위해 발족되었으며, 2005년 11월 8일 제1차회의를 시작으로 2006년 11월 27일까지 제5차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제5차회의에서는 그 동안 논의되어온 방안들을 종합하여 '항생제 사용절감 대책안'의 초안을 발표하였고, 이 대책(안)에는 동물용항생제 사용절감 방안으로 수의사처방제를 포함한 사육환경 개선, 배합사료첨가용 항생제 관리강화, 동물약사관리제

도 강화, 잔류물질 및 항생제내성균 조사사업 강화, 소비자와의 Risk Communication 확대, 건강 증진물질개발 지원 및 연구사업 실시, 미생물오염 저감대책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우리회에서는 우연철기획실장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제4차회의에서 “수의사처방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바 있다. 이문한 위원장은 제5차회의에서 “앞으로 전문가 소모임 등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 대한수의사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회에서는 2005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회정보화 지원사업 업무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1960년 발행된 “수의계”부터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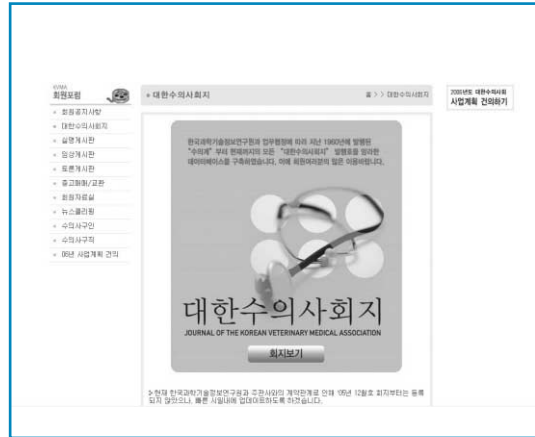
까지 발행된 모든 대한수의사회지의 발행호를 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협회정보화 지원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각 단체의 협회지나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술정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지원사업으로, 현재 우리회 홈페이지 회원포럼 내의 “대한수의사회지”를 통해 지난 회지의 목차, 저자, 주제등으로 검색하여 모든 내용의 원문열람이 가능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회마을이나 협회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타 학회 및 협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0 한미 FTA 서비스분야 관련 의견제출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하여 의학, 법률, 수의학 등의 전문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분야



항생제사용절감연구모임



대한수의사회지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개방여부가 논의중이다.

우리회에서는 지난 DDA 양허안 제출과 한일 FTA 등 수의서비스 분야의 개방여부에 대하여 당사국의 수의학 수준과 수의사 배출현황을 고려하여 수의사면허를 상호인정하는 MRA(상호인정협정)을 통한 적극적인 협상을 의견으로 제출한바 있다.

이번 한미 FTA에서도 양국의 수의사 배출현황과 수의학 수준 등을 고려하여 MRA를 바탕으로 한 수의학 및 수의사의 상호교류를 의견으로 제출하였고, 현재 수의사법에서 수의사가 아닌 법인형태의 동물병원개설에 대하여 추후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을 유보내용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수의서비스분야에 대하여 '유보없음'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실제 미

국내에는 연방법 이외에 각 주정부별로 자격제도 인정에 대한 별개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사실상의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내의 여러 주에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수의사면허증획득과정(ECFVG)'를 마쳐도 NT (National Treatment :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획득되어야 수의사면허를 인정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절차를 합격한다면 어느 주에서든 미국국민과 동등하게 수의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협상조건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한미 FTA와 관련 전문직 비자쿼터 수요량 조사에서 수의분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수의사공급이 과잉한 상황이므로 일정수의 비자쿼터 수요량을 배분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기타 소식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추진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각기 이명규의원, 이제경의원, 이영호의원, 심재철의원, 공성진의원, 정부(농림부)로터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한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28.)에서는 이상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 내용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伴侶)동물의 사육 및 유기(遺棄)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물의 등록제 도입(안 제5조)
- 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안 제6조)
- 다.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안 제7조)
- 라.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안 제8조)
- 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안 제14조)
- 바.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안 제19조)
- 사.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안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식품안전처 신설관련, “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 심포지엄 개최

우리회에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과 지난 2006년 7월 6일 수의·축산계 관계자,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회장의 개회사와 한나라당 이강두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심포지엄은 최양부박사(전 주 아르헨티나 대사, 전 대통령 농림해양 수석비서관)의 ‘소비자 농업시대의 농축산식품위생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



소비자농업시대와 농식품안전관리 심포지엄

의 주제발표와 윤석원학장(중앙대), 김연화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최영열회장(대한양돈협회), 진길부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 곽노성박사(국무조정실), 홍종해교수(강원대 수의과대학)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3월 정부의 식품위생관리업무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처' 신설 발표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에서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식품안전처' 신설의 효율성과 식품안전성, 수의·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식품안전관리 추진 위원회"를 결성한바 있다.

뉴질랜드, 제14차 FAVA총회 개최

지난 2006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SKYCITI CONVENTION CENTRE에서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FAVA) 제27차 이사회 및 제14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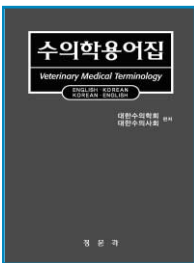
제27차 이사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뉴질랜드에서 참가하여 제30차 FAVA이사회 개최장소 선정, 2006 ~ 2008년 FAVA 임원선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제83차 뉴질랜드수의사대회와 병행하여 개최된 제14차 FAVA총회에는 30여 회원국에서 참



아시아태평양수의사총회(FAVA)

석하였으며, 총 6개 Section으로 운영되어 학술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우리회에서 정영채회장, 허주형 인천광역시지부장, 우연철기획실장과 서울대 김선중교수, 강원대 이민재교수, 현창백교수, 전북대 김남수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대한수의학회공동수의학용어집 출간



수의학용어집

우리회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사)대한수의학회(이사장 : 이문한, 회장 : 강정부)와 공동으로 수의학용어집을 발간하였다.

인천광역시지부 동물보호소 개소

지난 2006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

장 : 허주형)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에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보호소’를 개소하였다.

지부의 예산과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건립된 이번 동물보호소는 기존의 동물보호소와는 다르게 일반인들에게 주말농장으로 개방하여 유기동물들이 재분양 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안락사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날짜순으로 안락사되던 관행을 탈피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분실된 동물을 즉시 동물보호소로 이송할 경우 주인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므로 인천광역시 내의 전 동물병원을 1차 보호소로 지정하여 유기된 동물이 병원에서 3일간 보호관리 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동물보호소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인천광역시수의사회 허주형회장은 “수의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기존 동물보호소들과 운영상의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회원들의 힘을 모아 건립된 보호소인 만큼 수의사들의 사회적인 역할과 봉사가 더욱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



인천광역시수의사회 동물보호소 개소식

로도 동물보호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의 많은 협조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지부 창립 50주년 행사개최

경상북도 수의사회(회장 : 권춘수)는 지난 2006년 9월 27일(수)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회원 및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경북 도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이 있었고, 기념식 1부행사는 권춘수지부장의 인사말과 경상북도 김용대 행정부지사, 우리회 정영채회장, 일본 북해도수의사회 金川弘司회장의 축사 및 이차수 전 경북대 수의과대학장의 “수의학과 한국임상수의사의 미래”라는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이어 2부에서는 축하연회와 경북대 수의과대학 장광호교수의 “한우의 외과 처치”에 대한 세미나

를 마치고, 경주 박물관 등 유적지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상북도 김용대 행정부지사, 우리회 각 시·도지부장,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최상호 본부장, 경주축협조합 최삼호 조합장, 전국한우협회 전영한 경북도지부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기념식을 축하하였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자가진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지난 2006년 5월 12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위원장 : 홍하일)에서는 수의사법 제10조 및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와 관련 ‘자가진료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국건수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취지는 첫째 수의사법 제10조 및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으로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며, 둘째, 수의사들의 기본권인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수의사들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입각하여 직업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 행사 범위가 예측가능 하나 위 두 조항은 수의사들의 진료 기회가 사육자의 의사에 따라 전적으



경상북도지부 창립 50주년 기념식

로 좌우되게 함으로써 수의사 면허제도를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증진마저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6년 5월 30일 이번 ‘수의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하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키로 결정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이영호의원 수의사법개정안 입법시도

지난 2005년 9월 수의사의 진료범위에서 어패류진료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수의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이영호의원의 발의안이 지난 2006년 11월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상정된 개정안은 별다른 진전없이 보류되어 당분간 입법과정이 다시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관계자들의 반대입장과 개정안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영호의원은 지속적으로 입법 진행을 주장하고 있어 물의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회에서는 부당한 입법주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수의학회, 영문학술지 SCIE 등재

(사)대한수의학회 (이사장 : 이문한, 회장 : 강정부)에서 발행하는 영문학술지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JVS : 편집위원장 이흥식)”가 지난 6월 1일 SCIE에 등재되었다.

편집위원장 이흥식교수는 “JVS가 창간된 지 1년 반 만에 PubMed / MEDLINE에 등재된 것 보



영문수의학회지

다 값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현재 국내 모든 과학 논문이 SCI 또는 SCIE에 발표되지 못 하면 우수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SCI 및 SCIE란 세계적인 학술정보분석기관인 ISI에서 전세계에서 발간되는 논문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번에 JVS의 SCIE 등재는 우리나라 생명과학 분야 잡지 중 10번째 등재며 의학분야 학술잡지 154종 중 5번째로 등재된 것이다.

현재도 게재 논문의 40%~50%가 외국인 투고 논문이지만 이 추세가 더욱 가세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수의계 과학자들은 외국에 많은 게재료를 지불하고 평가받고 논문을 게재하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어 외화도 절약할 수 있고 판권, 특히 등 선취를 위한 시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수의학계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 야생너구리에서 광견병 양성 판정

지난 9월 24일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산12번지 인근 뒷산에서 개와 투쟁중이던 야생너구리가 광견병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개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조치하였으나 광견병에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지정

최근 케타민이 동물약품상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판매되어 일반인들이 환각제로 사용하거나 일부 범죄에 이용하는 등 오·남용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동물병원 근무 의사)에 한하여 사용, 관리 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11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 공포하였다.이 개정안은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투약만 가능하며 제품상태의 판매나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사용과 유통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었다.

수산용 항생제 사용 국제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식약청은 수산용 항생제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인체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전략을 수립하고자, 관련 국제기구인

FAO/WHO/OIE/Codex와 공동으로 2006년 6월 13일부터 6월16일까지 제3차 국제전문가 회의 (Joint FAO/WHO/OIE Expert Consultation on Antimicrobial Use in Aquaculture and Antimicrobial Resistance)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수산, 축산, 수의학, 의학 및 식품 분야 국내외 항생제내성 전문가 37명(21개국)이 참석하였다. 국제기구인 FAO(국제식량기구), WHO(세계보건기구), OIE(국제수역사무국),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전문가들과 해수부, 농림부, 식약청 전문가 및 '국가항생제내성전문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우건조 부장이 의장으로, 전 세계수의학회 회장이며 OIE 의장인 Dr. Herbert Schneider가 부의장으로 선임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는 각국의 수산용 항생제 사용, 수산용 항생제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국가 및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수산용 항생제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전략 수립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수산용 항생제 사용 및 항생제 내성에 관한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추진을 위한 권장사항이 확립되었다.

이 권장사항은 향후 각 국가별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줄이기 위한 규범으로 사용될 것이다.관계자는 "WHO와 OIE는 각각 임상 및 축산분야에 대한 올바른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방안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수산분야에 대한 지침 개발은 이번이 국제적으로 처음이며 이러한 국제지침 개발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

지난 2003년부터 식약청이 주관하는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으로 수의사처방제 등 동물약품안전사용에 대한 관심 증가되고 있다.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은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2003년부터 식약청이 주관부처가 되어 농림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본부, 소비자보호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생제 내성 균주은행, 20개 대학·종합병원 및 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계되어 착수한 국가정책사업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제1기)의 사업은 단기목표인 실태조사, 국가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 운영 등 항생제 내성 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달성도가 높고, 항생제 내성 및 축수산분야에서의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림부에 AGP's에 대한 위해평가 및 수의사처방제 권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사업은 향후 추진 내용으로 1) 임상(인의료)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2) 비임상(축수산, 환경 등)분야에서는 연구성과를 가지고 정책반영 노력, 3) 약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등 비임상분야 제도정책연구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추진내용 및 체계

